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

개인신용정보 내부관리지침

2021. 7. 제정

목차

제 1 장 총칙.....	3
제 1 조 (목적).....	3
제 2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3
제 2 장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기준	3
제 3 조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원칙).....	3
제 4 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4
제 5 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4
제 6 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6
제 7 조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6
제 8 조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예의 이용금지).....	7
제 3 장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7
제 9 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7
제 10 조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8
제 11 조 (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8
제 12 조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9
제 13 조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및 업무).....	10
제 14 조 (신용정보 이용 및 관리 원칙).....	10
제 4 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12
제 15 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12
제 16 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통지).....	12
제 17 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13
제 18 조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14
제 19 조 (신용정보의 열람·정정 청구 등).....	14
제 20 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15
제 21 조 (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16
제 22 조 (업무목적 외 누설금지).....	16
제 23 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보장).....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이하 “회사”이라 함)가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회사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주체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이 적용되어 왔으나, 회사의 신용거래 증가 및 대부업자 등록에 따라 증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등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을 둔다.
2.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 신용보호주체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지침에 사용된 용어는 달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기준

제3조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원칙)

1.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본 지침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③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1. 업무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른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는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등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는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1.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서면
 - ② 「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 ③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과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④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⑤ 그 밖에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하는 방식
2.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이용동의를 받을 경우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6항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및 정보보유기간·이용기간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4.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 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5.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②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③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시행령 제28조 제10항 각호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④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⑤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4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⑥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⑦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⑧ 시행령 제28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대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⑨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7.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8.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9.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처리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양식은 [별첨1]과 같고, 동의서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과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개인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 ②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5조 제6항 각 호의 경우
-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제7조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이용

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② 성명, 주소,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8조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예의 이용금지)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장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제9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1.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 ②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 ③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6 다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면책·복권 결정 및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 ④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6 나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 ⑤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6 아목 및 이 영 제2조 제17항 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 정보로서 감독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신용정보

제10조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또는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첨2]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에 따른다.
2.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신용정보업무 처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다만, 통신망을 통한 파일 송수신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산기록을 보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 가) 수집·이용한 날짜
 - 나) 수집·이용한 정보의 항목
 - 다) 수집·이용한 사유와 근거
- ②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 ③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 가) 폐기한 날짜
 - 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
 - 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방법
 -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 나)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 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 다)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 제22조의 4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방법
 - ②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
2.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대출 사기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 ④ 리스크 관리 및 신용평가 모형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⑥ 신용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신용정보 (제7조 제3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3.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제1항 제1호에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관리기간, 삭제의 방법·절차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및 업무)

1. 신용정보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신용정보업무 소관부서장으로 지정하여 운용한다.
2. 제1항의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②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③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 ④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⑤ 임직원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⑥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⑦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장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 ② 제1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이사장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제14조 (신용정보 이용 및 관리 원칙)

1. 신용정보는 전산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 이외의 방법으로 신용정보가 수집되는 등 해당정보를 전산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별로 관리하되, 관계법령, 감독규정,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지침 등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하여 집중·활용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범위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회사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① 내부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도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② 조사 또는 채권추심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신용정보의 교환·이용을 목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④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청구 등에 응하는 경우
 - ⑤ 관계법령에 따라 외부로 제공하는 경우
 - ⑥ 그 밖의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회사의 임·직원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제공·조회하는 경우는 제외)
 - ②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업무목적 외 이용을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③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는 행위
 - ④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⑤ 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도 이를 개별 전산기록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할 수 없게 하는 행위
 - ⑥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행목적, 개인신용정보 보호조치 등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행위
 - ⑦ 업무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
6. 회사의 임·직원은 신용정보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금융거래정보, 재무정보 등이 불필요하게 제공·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 ② 신용정보조회는 업무상 출력하여 관련 서류철에 편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화면조회를 활용한다.
 - ③ 신용정보조회서, 기업평가서 등 신용정보가 인쇄된 자료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면지로 활용하지 않고 폐기처분한다.

- ④ 내부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 처리된 신용정보자료(파일, 서류 등)를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⑤ 사무실내에 각종 신용정보자료 등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고 등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 신용정보자료 등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신용정보의 무단조회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한 징계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15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계약 시 또는 변경시에 서면 또는 SNS, E-mail 등을 이용하여 고지한다.

- ①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②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③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④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⑥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제16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통지)

- 1.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요구한 날로부터 7

일 이내(발송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최근 3년간의 다음 각 호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날짜, 이용목적,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②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②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③ 성과관리
 - ④ 위탁업무의 수행
 - ⑤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⑥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4.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첨3]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현황 조회신청서"를 제출 받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첨4]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로 회신한다.
5.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1. 회사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①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②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 ③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2.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의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고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별첨5]의 “대출신청결과안내서”로 거절·중지 근거를 고지한다.

제18조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회사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회사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 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신용정보의 열람·정정 청구 등)

1.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감독 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회사는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3. 정정청구를 받은 회사는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회사는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5. 회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6. 회사는 제5항 신용정보주체의 이의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첨6]의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5항에 따라 [별첨7]의 "신용정보 정정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로 회신한다.

제20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1.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 5년
 - ②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 : 3개월
2. 회사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제12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6.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별첨8]의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서"를 제출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첨9]의 "신용정보 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금융거래 종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적절한 통지(예시)문구를 기재하여 회신한다.

제21조 (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1. 회사는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제20조 제4항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 ②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 ③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④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⑤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2. 회사는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업무목적 외 누설금지)

1.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업무목적 외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보장)

1. 회사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가입금액은 감독규정 제43조의7에서 정한 최소금액인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처리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필수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대부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22 조, 제 24 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33 조, 제 34 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 조, 제 26 조의 2 에 따라 귀사가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본인확인, 신용조회, 대금결제 등 대부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 신청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
-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처리, 민원해결, 금융사고 조사 등

2.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이메일(전자우편주소), 자택(직장)주소, 연락처, 직장명 및 사업자번호, 입금계좌)
 -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부,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능력정보(대부금액이 3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채무의 총액 등을 의무적으로 파악)
 - 신용도 판단정보(신용등급·신용평점,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등)
 - 공공기관 정보(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경매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상기 개인(신용)정보 포함

3.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가 귀사에 의해 거절된 시점까지 또는 거래종료(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된 시점) 후 5 년까지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본인은 귀사가 상기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자인 경우),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20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조회에 관한 사항]

본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사가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공공기관 및 통신회사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조회 목적

- 계약 등 대부거래의 체결·유지·이행·관리

2. 조회할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기관 정보

3. 조회처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공공기관 및 통신회사

4. 조회동의 효력 기간

- 상기 동의는 당해 거래종료일(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된 시점)까지 효력이 유지되나,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가 귀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 본인은 귀사가 상기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자인 경우),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20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산정 이외에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제 22 조, 제 24 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33 조, 제 34 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 조의 2, 제 25 조, 제 26 조의 2 에 따라 귀사가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제공 목적

- 본인확인 및 신용도 평가 등 신용조회업무,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계약 등 대부거래의 체결·유지·이행·관리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포함)

2. 제공정보내역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대부거래), 신용능력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5 만원 이상, 90 일 이상 연체시 ("연체"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보 제공처

- 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집중기관
- 수탁업체

※ 상기 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4. 정보 보유기간

-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약에 근거한 기간까지, 수탁업체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는 거래종료일(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된 시점) 이내에서 수탁계약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본인은 상기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자인 경우),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20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기준

I.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 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두 대의 컴퓨터(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만 사용하도록 한다.
- ②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 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 한다.
- ④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 ⑤ 개인신용정보주체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 ⑦ 업무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 근권한을 부여하고, 권한 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 다.

2.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 ①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 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 업 보관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 ①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사유·내용 등을 기록·관리한다.
- ②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 다.
 - 나)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 다)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신용정보회사등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라)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⑤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처리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한다.

5.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한다.
- ②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II. 관리적 보안대책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가)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마) 임직원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바)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감사체제 정비

나)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센터·지역본부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 실시

③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한 등

- ①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 위탁 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모형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 개인신용정보를 변환하여 제공한 후 모형 개발 완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②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을 개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형 개발 또는 검증 등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실제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

1.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업무목적 외 이용을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② 이용권한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 ③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제공·조회하는 경우는 제외)
- ④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하거나 누설된 정보를 다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⑤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하여 제3자가 실제 조회·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제재대상 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은 직원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첨 3] 신용정보 이용·제공현황 조회신청서

신용정보 이용·제공현황 조회신청서

(주) 카길애그리퓨리나 앞

신 청 인	기업체(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사)소재지				
			본 인 확인필	직위	성 명
					(서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5 조에 따라 신청일로 부터 최근 3 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한 내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인)

(대리인)

※ 정기적으로 이용 제공현황을 통지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만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 통지 (선택사항)	통지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우편
	이메일 또는 우편물 수령처	
	통지주기	매 1 년

* 첨부 : 본인 확인 및 위임사실 확인 서류

개인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법인	-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직접방문의 경우 :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인 위임에 의한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별첨 4]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

귀하

신청인	기업체(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사)소재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5 조에 따라 년 월 일
(신청일)부터 최근 3 년간 귀하의 신용정보를 이용·제공(직접 제공한 경우에 한함)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이용내역

이용날짜	이용목적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내역

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년 월 일

(주) 카길애그리퓨리나 (직인)

※ 본 통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	------	------	---------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 작성 방법>

- ☐ 기재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 별도 첨부
- ☐ 이용 및 제공된 신용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으로 구분
 -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
- ☐ 이용 및 제공 목적에 대한 안내
 -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법 제 35 조제 1 항 단서)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자체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한 현황
- ☐ 제공받은 자의 범위
 -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법 제 35 조제 1 항 단서)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 제공한 목적에 대한 안내
 - 정보를 제공한 목적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기재
- ☐ 그 밖의 안내 사항
 - 그 밖에 본 통지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내용 기재

[별첨 5] 대출신청 결과 안내서

대출신청 결과 안내서

(기준일자: 년 월 일)

_____ 의 . . 일자 대출신청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 및 신청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대출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6 조제 1 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당 신용정보주체

성명	신청기업과의 관계

☐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한 신용정보

해당기관	신용정보 항목	해당 여부 (해당 시, ○표시)
NICE 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현재 연체 등	
	연체 이력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등	
	사기·허위대출 및 신용카드 관련 부당행위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체납정보, 파산·면책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개인채무회생정보 등	

상기 신용정보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확인(홈페이지 등)하시기 바라며, 제공된 신용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안내서를 받으신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증신청을 거절하도록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구분	기관명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신용조회회사	NICE 평가정보(주)	1600-1533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여의도동)	www.nicecredit.com
	한국기업데이터(주)	02)3215-2777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여의도동)	www.kedkorea.com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02)3705-5000	서울 중구 명동 11 길 19(명동 1 가)	www.kcredit.or.kr

☐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정보 이외의 사유

본 결정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신용정보 이외에 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증심사기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20 년 월 일

(주) 카길애그리퓨리나 (직인)

<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6 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연체 정보, 대지급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 정보 등)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 1 항에 따라 고지 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 1 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신용정보를 수집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별첨 6] 신용정보 열람, 정정 신청서

신용정보 「열람」 「정정」 신청서

(주) 카길애그리퓨리나 앞

신 청 인	기업체명(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본사소재지)			
열람(정정) 대상				
열람(정정) 청구사유				
		본 인 확인필	직 위	성 명 (서명)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 열람 」 「 정정 」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인)
(대리인)

* 첨부 : 본인 확인 및 위임사실 확인 서류

개인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법인	-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직접방문의 경우 :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인 위임에 의한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용정보 정정요청 처리결과 통지서

귀하

귀하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공단에
년 월 일자로 삭제(또는 정정)를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기업체명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은 본사소재지)			
삭제(정정) 청구내용				
삭제(정정) 처리결과				
		담당자	직위	성 명

년 월 일

(주) 카길애그리퓨리나 (직인)

[별첨 8]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서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 (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유의사항		
1.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 조의 3 에 따라 금융거래가 종료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삭제로 인하여 자료열람 등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 조의 3 제 1 항에 근거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는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인 경우 금융거래 종료 후 5 년,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 조의 2 제 2 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기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귀 공단과의 금융거래 종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인) (서명, 인)		

(주) 카길애그리퓨리나 앞

* 첨부 : 본인 확인 및 위임사실 확인 서류

개인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법인	-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직접방문의 경우 :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인 위임에 의한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용정보 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귀하		
요구 내용	(주) 카길애그리퓨리나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종료에 따른 신용정보 삭제 요구	
조치 결과	* 아래 통지문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금융거래종료일 경과 기간에 따라 결과 작성	
	사례구분	조치결과 통지문 문구
	금융거래 종료 후 3개월 이내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는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인 경우 금융거래가 종료되고 5년,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종료 후 3개월~5년 이내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필수적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금융거래가 종료되고 5년 이후 삭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 3개월 경과 시점에 삭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금융거래 종료 후 5년 이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인 경우 금융거래가 종료되고 5년,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 시점에 삭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행 의무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 조의 2 제 2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주) 카길애그리퓨리나		직인